

☼ 공익: 나라 땅으로 사기 처먹는 사악한 것들

1. 적법: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죄-대지-토지-묘지까지 **몰수**-

& 賣國: 나라에서 적법하게 몰수한 나라 땅으로 사기 처먹는 **그들**-

"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."



→ 사악한 눈-**법원행정처**→개같은 눈→②→④

○ 민원내용: "**법원위장경매 사기**" 진정

1. 우리 처에 접수(2018. 8. 17.)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.

법원주사보 -☎- **한필규** 법원사무관 **조영귀** 심의관 **장영수** 기획심의관 & 전결 12/11 김도균

2. 귀하의 민원취지는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22938 부동산강제경매사건

& -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-**남의 땅**②

민원제목 :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죄 대지-토지-묘지까지 몰수 -**나라 땅**④



국가유공자증서

故 임 봉 하
1925. 11. 15.

가. 귀하께서 제기하신 와흘리 1483-4번지(도로)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3562호)에 의하여 등기가 된 토지로서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확인됩니다.



→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-2 대 849㎡ 지분(96분의 12) → 32㎡[남의 땅+國]
→ 32㎡[남의 땅+國]
→ 42㎡[남의 땅+國]

→ 사기 소송-

청구 취지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-2 대 849㎡에 관하여, 피고들은 공동하여

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,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건물의 지분

에 따라 산정하였다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-2 대 849㎡ 지상 건

4번유수자지분 32㎡	2022년2월23일	2022년2월23일	공유자 지분 96분의 12 -106㎡
4번강제호지분 32㎡	제14655호	매매	
4번주식회사인 42㎡			

→ 사기 재판-

기대가액 금53,000,000원

피명 사기		자명 오영주	
피명 사기		자명 김상현	
피명 사기		자명 이은영	

2 공익을 위한 공개 고발제보444화 매국행위

+

적법

國

위장경매

國

- 2. 판사- 지적측량을 실시하라-1483-2→773㎡[지분 **없는** 지분경매]
- ☞ 증여- 죽은 자가 협의를 거부하여 몰수 1483-4번지-205㎡[확인]
- & 법원- 위장-사기 경매→청구취지→남의 땅- 나라 땅 사용료를 지급하라-

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, 로 보답하겠습니다.

→**죄-대지-토지-묘지까지 몰수-**

Jeju 제주시

주무관
고승범

도로관리팀장
장민철

건설과장
김동훈

전결 2021. 4. 1. **2021.04.01[만우절]**

제목 반복 민원(1AA-2103-0361214) 종결 처리 알림

민원제목 :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**죄 대지-토지-묘지까지 몰수**

민원제목 : **죽은자가 협의를 하지 않아 토지 강제수용 가능하다 →544㎡**



1936. 분할



1973.9.25. 분할



1990.12.14. 분할

와음리 1483번지 1,048㎡(317필)

와음리 1483-1번지 10㎡(3필)

와음리 1483-2번지 1,028㎡(311필)

와음리 1483-3번지 10㎡(3필)

증여

→ 와음리 1483-2번지 899㎡(272필)

→ 와음리 1483-4번지 129㎡(39필) → **205㎡**

와음리 1483-2번지 849㎡ → **773㎡**

와음리 1483-5번지 50㎡



1483-1 10㎡

1483-2 **773㎡**

1483-3 10㎡

1483-5 50㎡

총면적 **773.05㎡**

1483-4 → **205㎡**

1483-4	소유권이전 →1950년대사망→	1983년10월27일 제46252호	1973년10월6일 증여 [증서번호]	소유자 북제주군 → 205㎡ 법률제3562호에
1267-3	소유권보존	1999년3월23일 제19889호		소유자 국 관리청 건설교 → 250㎡
1325(표)	소유권보존	1976년4월28일 제7064호		소유자 국 관리청 국제공 → 89㎡

2 공익을 위한 공개 고발제보444화 매국행위 +

3. 賣國행위→현황상 도로로 측량된 만큼 변태 사기 행위

& 변태행위: 2→ 100년 전 말뚝- [남의 땅-집] 사용료를 지급하라

& 사기행위: 4→ 50년 전 말뚝- 나라에서 몰수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라-



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

COURT OF KOREA

→賣國奴→소식 & 판결

○ 민원내용: "위장 사기경매 피해" 진정

민원제목 : -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면 코로나가 아님-119회사기 행정-

2. 귀하께서 제보하신 「코로나19-보이스피싱 길잡이-죄명-변태성 사기」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업무와 관련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-

	피 의 자 명	법원행정처장		처 분 일 자	2020.12.03.	
	수 리 피 명	<u>사기</u>		결 정 일 자	2021.02.17.	
	피 의 자 명	원희룡				
	수 리 피 명	<u>사기</u>				

1483-4	소유권이전 →1950년대사망→	1983년10월27일 제46252호	1973년10월6일 중의 증서	소유자 북제주군→205㎡ 법률제3562호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. 상기 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3562호)에 의하여 등기가 된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토지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.

재산세는 와흘리 1483-2번지 공부상 면적 849평방미터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, 공부면적이 잘못되었다면 지적부서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

☎항소심[판사]

지적측량을명함→

일금 : 이백이십이만사천
(₩ 2,224,200)



- 또한 토지세 관련하여 조천읍 와흘리 1483-2번지내 현황상 도로로 측량된 & ㎡만큼 재산세 비과세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판단

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,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건물의 지분에 따라 산정하였다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-2 대 849㎡ 지상 전

기레가액 금53,000,000원

피 명	사기		자 명	오영우	
피 명	사기		자 명	김상현	
피 명	사기		자 명	이은명	

2 공익을 위한 공개 고발제보444화 매국행위

+